

「평창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1년 09월 06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고, 2021년 0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평창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·시행 의무(안 제4조)
- 나.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(안 제5조)
- 다.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(안 제6조)
- 라. 권익보호를 위한 군수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독려사항(안 제7조)
- 마.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~제9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

○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
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4조에서는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·시행 의무

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,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

안 제6조에서는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

안 제7조에서는 권익보호를 위한 군수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독려사항

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.

○ 강원도 고령화 비율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도내 전체

인구 149만 7,109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0만 8,132명으로 20.6%에 달한다(2021.08.02. 강원일보) 합니다.

○ “장기요양요원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는

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 제도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을

설치·운영하는 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(39조의2)로 되어있습니다.

-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